



청탁 금지법이란?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배우자는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 금지

부정 청탁이란?

공직자 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여 직무 수행할 것을 청탁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은 14가지 행위 유형

- 인가·허가·면허·특허 등 직무 처리
- 행정처분 또는 형벌 부과 감경·면제
-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 공공기관 선정·탈락 등 의사결정 개입
- **수상·포상·장학생 선발 등 선정·탈락에 개입**
-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 특정한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처리 조작**
-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평가·판정 업무 개입
-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위법사항 묵인
-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부정 청탁 시 처벌의 기준

제3자를 통해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 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 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한 공직자 등

→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정 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 공직자 등의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의무화하였으며, 징계와 함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처벌

- ▶ 공직자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동일한 부정 청탁을 재차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 ▶ 부당한 청탁이 아닌, 정당한 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결

Q&A

- Q** 기관장이 이전 대학교수 시절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의 출판 서적에 추천사를 적어주면서 자신의 현재 소속 관과 직위를 함께 명기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 A** 타인의 출판 서적에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명기한 추천서를 적는 행위는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소속 기관과 직위를 게시하여 이용하는 것으로서 행동 강령 위반임**
- Q** 부하직원이 상급자의 경조사를 사전 양해 없이 상급자의 직무 관련자에게 대신 통지하는 행위는 행동 강령 위반 행위 아닌지?
- A** 「공무원 행동 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당사자를 대신하여 이들에게 통지하는 것 역시 행동 강령 위배되는 행위임**
- Q** 직무 관련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은 경우 모두 돌려줘야 하나요?
- A** 행동 강령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공직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는 것을 제한할 뿐 경조금품 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지 않았음에도 경조사를 우연히 알게 되어 경조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인 5만 원 범위 안에서 경조금품 수수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만 돌려주면 됨**
- Q** 특혜란 무엇인가요?
- A** 특혜란 **법령의 근거 없이 타 집단과 차별되는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위 또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연구나 종교 등에 바탕을 둔 의사결정이나 가치 배분의 왜곡을 말함
- Q** 행동 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물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 A** 선물이란 무상 또는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게 제공되는 화환·케이크·화장품·도자기 등 물품, 백화점 상품권·입장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함
- Q**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수용하여 직무수행을 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A**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소명하고 거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그대로 따른 경우, 그 일을 시킨 **상급자뿐만 아니라 지시에 따른 부하직원도 같이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